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제38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2020. 9. 23(수) 11: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 제38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20년 9월 23일(수) 11: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8명
- 출석감사 : 총 1명

사무국장이 제38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보고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 제209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209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준비와 학업 지속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요가 급증하여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분야 장학금 잔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희망플러스 장학금(338,000천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지난 이사회에서 코로나19로 글로벌장학사업추진이 어렵게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중단 등으로 취업 준비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주셨고, 희망플러스장학금 장학생 선발 결과 270명 선발에 1,143명이 접수하여 합격률이 23.6%로 장학금 수요가 많았다고 말하다. 또한 기부 기관((주)○○○○○○○○○○○○○○○○○○)의 입금 불가한 상황에 따른 서울희망SOS장학금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2020년 예산 변경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별 예산 변경과 기부 기관의 입금 불가한 상황에 따른 기부금 예산 감액을 반영한 것이라

고 말하고, 세입 총계 당초 12,991,519천원에서 100,000천원을 감액하여 12,891,519천원으로 변경하고, 세출 총계 당초 12,991,519천원에서 장학사업운영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여 총 12,891,519천원이라고 설명하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이사장이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9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1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1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 채용 의무 위반 시험위원 제재 규정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 선언문에서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바, 직원채용 시 결격사유에 아동을 추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를 거쳤다고 부연 설명하다.

이사장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1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1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를 거쳤다고 부연 설명하다.

이사장이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9월 23일